



제 6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9월 2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전**	전** 1983-09-19	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고산리	무단전출
차**	차** 1955-03-03	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	무단전출
이**	이** 1965-04-04	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	무단전출
김**	김** 1977-10-28	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권 정화 문의전화 : 054-653-7301)

2011년 09월 19일

풍양면장 인

